

충남대학교 대학원 대기과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4. 4. 18.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대기과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석사학위과정에 대한 종합시험 시험과목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자격시험은 학위과정별로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② 합격 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출제위원은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2인 이상을 위촉하며, 출제위원이 채점위원을 겸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지도위원회) 논문지도위원회는 논문 발표 한 학기 이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단, 논문지도 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다른 학과 교수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어능력 기준)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EPS 476점 이상
 2. TOEIC 600점 이상
 3. TOEFL(CBT) 163점 이상
 4. TOEFL(iBT) 57점 이상
 5.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행세칙 제2조 4호의 가항에 준하여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센터의 영어 관련 강좌 이수
-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본 학과의 석사과정에서는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따로 두지 않는다.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14. 4. 18.)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